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의 안 번호 1517

[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]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일 자 : 2019. 1. 25.(금)

나. 발 의 자 : 신성봉 의원 외 3명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2. 1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2. 15.(금)

2. 제**안설명 요**지(신성봉 의원)

가. 제정이유

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, 울산광역시 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O 조례의 목적, 정의, 남북교류협력의 추진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O 재정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12조)
- 기금조성 및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)
- 교육 및 홍보,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및 제11조)

다. 근거법규: 「지방자치법」제9조, 제142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계화)

본 제정 조례안은 중구와 북한지역의 주민이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, 구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와 이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-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